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주 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초등학교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의 학생을 배정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초등학교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의 학생을 배정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영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① ~ ⑤ (생략) <u>< 신 설 ></u>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초등학교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의 학생을 배정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교육재정교	
연락처	044-203-6641